

國際海洋法の 최근 動向과 한국 주변국의 海洋政勢

金榮球*

I. 序

1982년 12월 10일 Jamaica에서 締結된 유엔 海洋法 協約은 지난 1994년 11월 16일에 發效하였다. 이 協約은 “해양의 諸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既存의 해양 관습 국제법을 法典化하고, 아울러 현대적 海洋 利用 活動에 상응하는 새로운 前進的 立法을 완성한다.”¹⁾는 본래의 立法 目標가 結實된 것으로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종합적인 「바다의 憲章」인 셈이다. 이는 1967년 유엔 總會에서 Malta의 Arbid Pardo 大使가 深海底 資源의 국제적 管理를 위한 새로운 국제법 規범의 成案을 주장한 이래, 인간의 해양 活動 전반을 規율할 새로운 국제법의 總체적 立法을 위해 유엔이 主動이 되어 약 1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²⁾ 제 3차 유엔 海洋法 會議(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II)라는 대 규모 國際會議에서의 協商을 거쳐서 이루어 낸 國際 立法의 凱歌이다.

그러나 이 協約은 西方 선진국들이 이 協約의 深海底 開發에 관한 條項에 계속 반대를 하고 署名 조차도 거부해온 관계로 協約의 普遍性(universality)과 實效性³⁾이 문제가 되어 있었으며 그 일차적인 發效 要件⁴⁾인 60개국의 批准書가 기탁되는 데 만도 약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사실상 이 協約의 普遍性和 實效性 缺如의 문제는 1994년 7월 28일 유엔 總會에서 채택된 이른 바 「履行 協約」⁵⁾으로 실질적인 해결을 보아, 그 동안 深海底 開發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국제법)

1) 1982년 유엔 海洋法 協約, 前文 參照.

2) 유엔 海洋法 協約을 成案키 위한 제 3차 유엔 海洋法會議 (이하 UNCLOS III로 표기)에서는 1973년 New York의 제 1차 회기로 부터 년 2회씩 모두 16 차례의 회기를 가졌고, 會議에 실제로 開催된 기간은 모두 93개 週間이나 된다.

3) 이 協約 發效 要件인 60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1993년 11월 16일 현재로도 그 60개 批准國의 유엔 財政 負擔比率이 4.3%에 불과하였다.

4) 協約 제 308조

5) 「1982년 유엔 海洋法 協約 제 11장의 履行에 관한 協約,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0 December 1982.

U.N.G.A. Res/48/263.

制度에 관련하여 이 協約에 반대하여 오던 西方 선진국들이 각기 국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 協約에 批准해 올 것이 예상되므로⁶⁾ 이제 이 유엔 海洋法 協約은 당초에 목표로 한바, “해양의 諸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해양 관습국제법의 法典化와 현대적 海洋 利用 活動에 상응하는 새로운 前進的 立法”⁷⁾의 結晶體로서 名實이 相扶한 「바다의 大憲章」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유엔 海洋法 協約이 普遍性和 實效性을 갖추고 통일된 법 규범으로서의 規範 體系로 稼動하게 되면, 그 동안 선진 공업국들의 집요한 協約 反對로 協約 締結이후 10여년 동안 우려해오던 것과 같은 “海洋 秩序의 무정부 상태”는 이제 回避, 克服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의 海洋 利用 活動, 海洋 資源 開發 活動이 활발해 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海洋法 規範 體系의 稼動으로 海洋法에 관련된 多岐한 國家慣行과 지금까지 모호했던 관습법 규범의 내용들은 확연히 통일되어 가속력이 있는 법 규범으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당하여, 海洋法의 발효로 인하여 새롭게 전개될 국제사회의 일반적 상황, 특히 韓國, 日本 및 中國의 상관적 위치와 국제법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海洋政策 方向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II. 國際海洋法の 최근 動向

1. 새로운 海洋法 協約의 發效와 「履行協約」의 채택.

유엔 해양법 協約은 해양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成文法典이다. 이 속에는 전통국제법 이래 생성되어온 관습국제법의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전부가 관습국제법의 내용을 선언한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유엔 해양법 協約의 내용은 다음 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⁸⁾

첫째, 1958년 Geneva 해양법협약에서 관습법의 내용이 성문화되었던 부분을 1982

6) 濠洲와 獨逸은 이 履行 協約의 妥結을 계기로 海洋法 協約에 즉시 批准하였다.(1994년 10월 5일 및 1994년 10월 14일)

Law of the Sea Bulletin No.26.(October 1994)

Division of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Office of Legal Affairs. pp.5-18.

7) 1982년 유엔 海洋法 協約, 前文 參照.

8) 拙著, 現代해양법론, (서울: 아세아社, 1988), p.19.

J. K.Gamble, Jr & Maria Frankwska, "1982 Convention and Customary Law of the Sea Observation, a Framework, and a Warning." 21 *San Diego Law Review* (1984), 92.참조, 이들은 3개의 Category로 분류하고 있다.

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답습한 것. 제 2장 領海 및 接續水域, 제 7장 公海, 제 8장 島嶼 制度 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에 속한다.

둘째, 1958년 Geneva 해양법 협약 이후에 새롭게 생성된 관습국제법. 이들은 국제 사회의 변모와 해양활동의 발전에 따라 급격히 생성된 것인바 전형적인 것은 협약 제 4 장의 群島制度이며, 제 5장 排他的 經濟水域 및 제 6장 大陸棚 制度 그리고 협약 제 12 장의 海洋 環境 保存에 관한 제도 등이 원칙적으로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세째, 아직 관습국제법은 아니나,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성문화됨으로써 장차 관습국제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약상의 규범. 協約 제 3장 國際海峽에서의 通過通航 制度, 제 13장 海洋科學調查, 그리고 제 14장 海洋 技術의 移轉 및 開發 등을 이 범주 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째, 순수한 협약상 제도로 협약 발효 후에 체결국 간에만 법적 효력을 갖는 부분. 深海底地域의 海底鑛物資源의 개발에 관한 제 11장의 구체적 내용들과 제 15장의 紛爭 의 平和的 解決 制度가 이에 속한다.

1982년 체결된 이 유엔 海洋法協約은 成立 이후, 인간의 해양이용활동 및 해양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다 하였으며 協約 成立 이후 이어서 續開된 「準備委員會 會議」⁹⁾는 協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실질 문제의 토의를 진행시키는 훌륭한 協力的 場所가 되어 왔다. 특히 이 協約의 발효와 관계없이 이 協約의 많은 중요한 법적 내용이 새로운 관습국제법으로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사실이다.¹⁰⁾

그런데 특히 이 協約 제 11장은 深海底와 그 資源을 “인류 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定義하고 이 원칙을 頂点으로 國際 深海底 機構가 資源 개발의 主體가 되는 각종의 제도 즉 並行開發制度, 生産制限制度, 再檢討 會議, 開發廳 (Enterprise)의 事業 獨占, 強制的 技術 移轉 條項과 복잡한 議事決定節次 등 經濟主體 의 自由民主的 창의성과 기업활동의 자치를 제약하고 市場經濟原則들과 양립할 수 없는 統制的 원리를 도입하므로서 결국 미국 등 선진 공업국들의 완강한 協約 拒否의 原因을 제공하게 되었다.¹¹⁾

9) 國際 深海底 機構 및 國際 海洋法 裁判所 設立을 위한 準備 委員會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Prep. Comm.

10) 특히 각 국가의 海洋 活動 慣行이 海洋法 協約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함에 있어서 유엔에 설치된 「海洋法 事務所」(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의 역할이 컸다.

11) 미국 행정부의 협약 거부 이유는 다음 6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 ① 深海底 開發活動의 制約
- ② 개발청의 일방적 사업 독점
- ③ 國際 深海底(理事會) 議事決定方式의 不合理
- ④ 再檢討 會議 制度
- ⑤ 強制的 技術 移轉
- ⑥ 民族運動機構 등에 대표자격 부여.

이 協約은 1982년 12월 協約이 성립된 以來 미국 등 선진 공업국들로부터 철저히 拒
 否 당한 體 개발 道상국 위주로 批准이 進行되어 갔다. 결국 開發 道상국 중심으로 協約
 이 발효될 경우에는, ① 開發 資金과 技術의 不在로 인하여 深海底 開發 자체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② 運營 經費 不足으로 國際 深海底 機構 및 國際 海洋法 裁判所 등 協
 約機構의 運營 조차 불가능 할 것이 豫상되었다. 이미 協約이 妥結되기 직전 부터 선진
 공업국들은 그 들만의 「協約 외 開發體制」(a mini treaty system)를 논의하고 있어
 서¹²⁾ 協約의 장래는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지경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東歐 共產圈의 붕괴를 계기로 국제적 경제질서의
 조정에 있어서도 市場經濟原則의 적용이 다시 강조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深海
 底 鑛物資源 開發制度에 관련된 協約 제 11장의 제도가 전제로 하고 있었던 여러가지
 鑛業 기술상의 기본적 조건들이 비현실적이고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고.¹³⁾ 또 더구
 나 深海底 鑛物의 상업적 生産 전망이 당초의 豫상과는 판이하게 늦춰지게 되었다.¹⁴⁾

이에 따라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深海底 開發 制度 속에 내포된 陸上鑛物生産開途國
 보호규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이 深海底 開發制度를 이유로 중요 공업
 선진국들이 배제되고 있는 海洋法 協約의 普遍性(universality)확보를 위해 공업 선진
 국들과 협상 절충할 용의가 있음이 개도국 측을 대표하는 77그룹 議長의 이름으로 공표
 되게 되었다.¹⁵⁾

開途國 측의 이러한 적극적 태도가 契機가 되어 “海洋法 協約의 普遍性있는 稼動”을
 추구하는 유엔 總會의 결의를 성립시켰으며¹⁶⁾ 당시 유엔 事務總長 Javier Perez de
 Cuellar는 이 調停과 協商을 위한 “非公式 協議”(informal consultation)를 주재하게

Statement by President Reagan.

29 Jan. 1982. Weekly Comp.Presidential Declaration 94.

12) 拙著, 「現代海洋法論」, (서울:아세아 社, 1988). pp.728-31.

13) 協約상 深海底 開發制度가 전제한 基本要件과 狀況의 變化

① 深海底 鑛物의 상업적 生産 시기에 대한 豫측의 착오

당초 1976년 1월 1일 또는 늦어도 1985년 1월 1일로 가정했던 것이나 현재는 2020년 이후로 豫상된다.

② 深海底 鑛物의 市場 需要 豫측의 착오

육상광물의 再鍊기술 개발 및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Ni, Co, Cu, Mg 등 소위 전략 광물에 대한 市場
 需要가 극히 저조하다.

③ 陸上 및 沿岸에서 代替鑛物의 發見

1980년대 초부터 深海底가 아닌 陸上和 沿岸國의 인접 관할 수역에서 풍부한 대체광물(polymetallic
 sulfide and cobalt rich manganese crust deposits)들이 발견되었다.

Kim,Young-Koo, "A Suggestion for the Decision Making in the Seabed Mining Regime of the
 Law of the Sea", *Korean Journal of Maritime Law*, Vol.2, August 1990, pp.43-45.

14) Report of the Group of the Technical Experts to the General Committee of the Prep Comm.

LOS/PCN/BUR/R32. 1994.2.1. Para. 57.

15) *Law of the Sea Bulletin*, No. 15.(May.1990).

Division of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Office of Legal Affairs. p.55.

16) U.N.G.A. Res.44/26 (20 November 1989), 45/145 (14 December 1990).

되었다. 유엔 事務總長의 海洋法 協約의 普遍性 확보를 위한 이 “非公式 協議”는 Cuellar와 그 후임인 Boutros Boutros Ghali에 이어진 두단계의 협상 과정(two rounds)으로 진행되었다.

Cuellar가 주재한 제 1 과정(the first phase)은 1990년 7월 부터 시작되어 그의 임기 만료기인 1991년 12월 까지 계속되었으며 모두 6회의 비공식 회합을 갖었다.¹⁷⁾ 이 과정에서는 협약의 규정을 선진 공업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 쟁점사항을 확정하고¹⁸⁾ 개도국과의 일차적인 의견교환을 시도하였다.

Boutros Ghali가 주재한 제 2 과정(the second phase)은 1992년 6월 부터 시작 되었으며 9회에 걸친 회합을 갖었다.¹⁹⁾ 이 과정에서는 비공식 협의의 대상을 모든 국가에 개방하고 深海底 개발 관련 협약 규정을 개선함에 있어 그 동안 변화된 경제,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 사업에 있어 市場經濟 원리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주체적 위치를 확립하고 기존 투자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시켰다.

1993년 8월 회합 이후 부터는 협의의 내용이 급진전을 이루었는 바, 실질 문제에 관한 구체적 접근방안을 제시한 소위 “Boat Paper”²⁰⁾를 중심으로 9개의 중요현안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아울러 이 비공식 협의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협약에 연계시키느냐 하

17) 비공식 회합의 일자는 다음과 같다.

- ① 1990년 7월 19일. ②1990년 10월 30일. ③1991년 3월 25일. ④1991년 7월 23일. ⑤1991년 10월 14, 15일. ⑥1991년 12월 10, 11일.

18) 핵심쟁점사항은 다음의 9개로 정리되었다.

- ① 당사국이 부담하는 경비(Costs to States Parties)
 ② 개발청 (The Enterprice)
 ③ 의사결정 방식(Decision Making System)
 ④ 재검토회의(Reveiw Conference)
 ⑤ 기술이전(Transfer of Technology)
 ⑥ 생산제한 제도(Production Limitation)
 ⑦ 보상기금 문제(Compensation Fund)
 ⑧ 계약의 재정조건(Financial Term of Contracts)
 ⑨ 환경 문제(Environmental Consideration)

Law of the Sea Bulletin Special Issue IV (16 November 1994).
 p.2. Para.5.

19) 제 2단계 회합 일자는 다음과 같다.

- ① 1992년 6월 16, 17일. ② 1992년 8월 6, 7일. ③ 1993년 1월 28, 29일. ④ 1993년 4월 27, 28일.
 ⑤ 1993년 8월 2-6일. ⑥ 1993년 11월 8-12일. ⑦ 1994년 1월 31일-2월 4일. ⑧ 1994년 4월 4-8일.
 ⑨ 1994년 5월 31-6월 3일.

20) 草案의 표지에 深海底 개발을 상징하는 선박의 그림이 그려져서 “Boat Paper”로 불리게 되었다. 이 草案은 공업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Satya Nandan (Fiji), G. A. French (Australia), H. R. Valle (Brazil), Hazim Djalal (Indonesia), K. O. Ratray (Jamaica) 등에 의해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ouncil on Ocean Law, Vol.XI, No.2. (May 1994)

는 절차문제도 병행해서 토의되었다.

Boat Paper는 협상결과에 따라 점차로 수정되어 갔으며 한편으로 1993년 11월 16일에는 Guyana가 60번째로 海洋法 協約 批准書를 기탁하므로써 동 협약 제 308조에 명시된 協約 發效要件이 충족되었으므로 어찌 되었든 이 協約은 1994년 11월 16일에 發效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Boutros Ghali 유엔 事務總長이 주도하는 비공식 협의는 더욱 가속화 되었고 Boat Paper는 1994년 2월 및 4월 회합에서 수정을 거쳐서 「1982년 유엔 海洋法 協約 제 11장 履行에 관한 決議 및 協定 草案」²¹⁾으로 제출되었다. 이 초안은 1994년 5월의 마지막 회합에서 최종적인 修正을 보고 1994년 7월 28일 제 48차 유엔 總會에서 「1982년 유엔 海洋法 協約 제 11장 履行에 관한 協定」(以下에서는 「履行 協定」) ²²⁾으로 채택되었다.²³⁾

이 「履行 協定」은 유엔 海洋法 協約과는 단일문서로 취급되며 양자간에 모순이 있을 때는 「履行 協定」이 우선하므로²⁴⁾ 이는 사실상 協約 제 11장을 改定한 공식 문서(a protocol of amendment)로 보아야 한다.

「履行 協定」은 40개 국가가 批准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되어 있었다.²⁵⁾ 만일 이 「履行 協定」이 協約이 發效할 예정인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날(11월 16일)부터 「履行 協定」의 發效요건이 충족되는 날 까지, 또는 계속해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1998년 11월 16일 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

21) Draft Resolution and Draft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G/LOS/CRP.1/Rev.1 (3 June 1994)

22)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of December 1982.
A/Res/48/263.

23) 찬성 121, 기권 7, 반대 0.

Official tabulation of the vote on the draft resolution of the Agreement, 101st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8 July 1994.
A/48/L.60.

24) 「履行 協定」 제 2조 1항.

25) 「履行 協定」 제 6조.

이 40개 批准 國家에는 協約 結의 II, 제 1항 (a)에 규정된 先行 投資國 (pioneer investor; PI) 중 7개 국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 이 7개국에는 5개국 이상의 선진국이 포함되어야 한다.

協約 結의 II, 제 1항 (a)의 先行 投資國은 다음 3 종류가 있다.

범주 1: 프랑스, 일본, 印度, 소련(지금은 러시아)

범주 2: 4개의 深海底 開發事業 Consortia(OMA, Kennecott, OMI, OMCO)의 持分參與國 8개국: 벨기에, 캐나다, 西獨(지금은 獨逸), 이태리, 일본, 荷蘭, 영국, 미국.

범주 3: 1985년 1월 1일 까지(나중에 이 時限은 協約 發效時 까지로 完化됨) 3천만불을 深海底 開發사업에 투자한 開發途上國. 이 범주에 든 PI로는 중국, 한국 그리고 OMI 등이 있다.(拙著, 「現代 海洋 法論」, pp.683-4.)

그러나 "선진국"의 概念에 관한 定義나 또는 범위의 규정은 協約이나 「履行 協定」의 어디에도 없다.

다.26) 우리나라는 1994년 11월 7일 63번 제로 「履行協定」에 署名하므로서 그 잠정 적용국이 되었다.

예정대로 유엔 海洋法 協約은 1994년 11월 16일에 發效되었으며 또 이 「履行協定」도 그 제6조에 의거 금년(1996년) 7월 28일 발효되었다. 한국, 일본, 중국 및 미국의 이 「履行協定」 참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국 가	서 명	비준, 가입
한 국	1994년 11월 7일	1996년 1월 29일
일 본	1994년 7월 29일	1996년 6월 20일
중 국	1994년 7월 29일	1996년 6월 7일
미 국	1994년 7월 29일	(1996년 7월 17일)*

*: 잠정적용의 계속에 관한 통고

이 「履行協定」의 採擇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공업국들이 海洋法 協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마련된 것이다.²⁷⁾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이 「海洋法協約」 참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국 가	서 명	비준, 가입
한 국	1983년 3월 14일	1996년 1월 29일
일 본	1983년 2월 7일	1996년 6월 20일
중 국	1982년 12월 10일	1996년 6월 7일

1996년 12월 17일 Romania가 비준하므로서, 현재 「海洋法協約」의 비준국은 총 110 개국이 되었다.

26) 「履行協定」 제 7조. 잠정적용 대상국은,

- (1) 「履行協定」 채택시에 贊成한 국가.(121개국)
- (2) 「履行協定」에 同意 署名을 한 국가(1994년 11월 16일 현재 68개국)
- (3) 수탁자에게 書面으로 잠정적용을 승인한 국가(1994년 11월 16일 현재 EC, France, Italy, Japan)
- (4) 「履行協定」에 加入한 국가.

들이다. 물론 1), 2)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잠정적용을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잠정적용 배제의 의사표시를 한 나라는 1994년 11월 16일 현재 17개국이다.

Law of the Sea Bulletin. Special Issue IV (Nov. 16, 1994.), pp. 26-38.

27) 미국의 海洋法 協約 批准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한 입장이 公報되지는 않았으나 美國 上院 外交委員會 聽聞會 기록에 의하면, 강력한 批准 同調의 견해들이 표명되고 있다.

2. 해양법 협약 체계의稼動

(1) 해양법 재판소의 설립.

協約 규정 제308조 3항에 의거하여 國際深海底 機構(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BA)의 總會(Assembly) 모임의 제1차 회기가 세 번에 걸쳐 개최되었다. 즉 총회 제1회기는 1994년 11월 16-18일, 1995년 2월 27일-3월 17일, 1995년 8월 7일-18일 세 번에 걸쳐 Jamaica에서 열려 海洋法 協約 體制의 早期 稼動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理事會의 구성을 위한 理事國의 선임과 海洋法裁判所의 開設 문제이었다.

이 해양법 재판소는 해양문제에 관련된 국가 간의 분쟁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키 위한 중요한 國際司法機關으로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제 15장 및 제 6부속서에 의거해서 새로 신설된 재판기관이다. 이는 유엔 헌장 제 92조에 의거해서 「헤이그」에 설립되어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쌍벽을 이루는 국제사회의 司法的 분쟁해결기관이다. 해양에 관련된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현대 국제사회에 있어서 점차로 그 중요성이 커가고 있으므로 해양법 협약에서 국제사법재판소와 별도로 이 재판기관을 신설한 것은 참으로 의의있는 일이다. 歐洲人權協約이 유럽인의 인권문제를 위해 歐洲人權裁判所를 따로 설치한 것 처럼 특정분야의 분쟁은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설립된 사법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데 따로 해양법재판소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도 있다. 어찌됐든 해양문제의 분쟁 당사국들은 그 분쟁의 司法的 해결을 위해 분쟁해결의 절차와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협약 제 280조).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와 새로 생긴 해양법 재판소는 동등한 자격으로 선택되는 司法的 수단이 된다(협약 제 287조).

해양법 재판소를 구성하는 21명의 재판관은 전체적으로 세계의 중요한 법체계가 대표되고 지리적으로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해양법 재판소 규정 제 2조 2항).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배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각 지리적 구분 마다 3인 이상의 재판관을 선출토록 한다.”라고 규정한 동 규정 제9조 2항 밖에는 없다. 그리하여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이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의 5개 지역 구분별 재판관 수의 배분을 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에 5명, 아프리카 지역에 5명,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에 4명,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4명, 동 유럽 지역에 3명 등으로 배분되었다.

海洋法 裁判所의 구성을 위해 그 裁判官 선임을 위한 제 1차 선거를 協約 發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었지만²⁸⁾ 1994년 11월 21일, 22일에 소집된 초

기 當事國회의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에서는 「履行協約」으로 새롭게 협약을 批准하게될 선진 공업국들의 국내적 절차 이행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를 1년 以上 연기하기로 정하였으며 결국 1996년 8월 1일에 실시기로 되었다. 다만 유엔 事務總長은 1995년 5월 16일 (즉 협약 發效후 6 개월) 以內에 海洋法裁判所 書記長 代理(an Acting Registrar)를 지명토록 하였다.²⁹⁾

유엔 사무총장은 1995년 3월 27일 각국으로 하여금 해양법 재판소 판사 후보를 지명토록 권고하였는 바, 이 권고에 의거 협약 당사국인 각국은 33명의 후보를 지정 등록하였다. 이 후보 등록은 1996년 6월 17일 마감되었다.

1996년 7월 24일 부터 8월 2일에 걸쳐 New York에서 소집된 제5차 當事國 회의에서 21명의 재판관이 선임되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28) 協約 제 6附屬書, 제 4조 3항.

29) Moritaka Hayashi, "Towards Univers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Script presented in the SEAPOL meeting at Shangri-La Hotel Bangkok, Thailand. December 14 1994.

재 판 관	소 속 국 적
AKL, Joseph*	Lebanon
ANDERSON, David Heywoo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AMINOS, Hugo **	Argentina
EIRIKSSON, Gudmundur **	Iceland
ENGO, Paul Bamela *	Cameroon
KOLODKIN, Anatoly Lazarevich *	Russian Federation
LAING, Edward Arthur **	Belize
MAROTTA RANGEL, Vicente *	Brazil
MARSIT, Mohamed Mouldi	Tunisia
MENSAH, Thomas A.	Ghana
NDIAYE, Tafsir Malick **	Senegal
NELSON, L. Dolliver M	Grenada
PARK, Choon-Ho	Republic of Korea
RAO, P. Chandrasekhara *	India
TREVES, Tullio **	Italy
VUKAS, Budislav	Croatia
WARIOBA, Joseph Sinda *	United Republic of Tanzania
WOLFRUM, Rudiger *	Germany
YAMAMOTO, Soji	Japan
YANKOV, Alexander **	Bulgaria
ZHAO, Lihai **	China

위의 명단 중에서 *표 하나는 3년 임기, *표 두 개는 6년 임기, *표가 없는 사람은 9년 임기의 재판관으로 선임된 것임.

해양법 재판소는 독일의 함부르그에 위치하며 21명의 재판관이 그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것과 대비될 수 있다. 해양법 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와 똑 같이 9년이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임기를 3년, 6년 및 9년으로 나누어 놓으므로 매 3년 마다 전체 재판관의 1/3이

교체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첫번 째로 선임된 각 재판관의 임기를 이 세 종류 중의 어느 것으로 하는 가는 유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일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에 선임된 우리나라의 박춘호 교수는 이 추천에서 9년 임기로 결정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5명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및 레바논 후보가 각기 재판관에 선임되었다. 이중 한국과 일본 국적 재판관은 임기 9년이며, 중국은 6년, 인도와 레바논이 각기 3년으로 되었다.

한국은 그 동안 국력이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고위직으로 진출한 인사가 적어서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 국가적 位相이 위축된 느낌이 없지 않았으며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찍 부터 일본과 중국 국적재판관이 배출되어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국제법원의 재판관을 배출치 못하여, 점차로 증대하는 국제적 분쟁을 대부분 司法的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立地가 약화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해양법재판소에 한국 국적재판관을 배출한 것은 국가적인 快舉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 국적 재판관이라고 해서 사법적 판결을 함에 있어서 한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편파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그렇게할 수도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도 그렇지만, 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공정성과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며 특히 해양법 분야에 있어서 권위와 능력이 인정된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 국적재판관이 해양법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권위있는 판결을 해나가고 있는 한, 적어도 공명正大하게 국제문제를 해결해 가려하는 한국의 의지는 명실 공히 존중될 것이며 그 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고양될 것으로 본다.

해양법 재판소는 독일 함부르그에서 지난(1996년) 10월 1일 부터 그 정식 업무를 개시하였다.

(2) 국제 심해저 기구의 稼動

國際深海底 機構(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BA) 총회(Assembly) 제2차 회기 모임은 1996년 3월 11일 부터 22일 까지, 및 8월 5일 부터 16일 까지 Kingston, Jamaica에서 두 차례 소집되었고, 제3차 회기 모임이 1997년 3월 17일 부터 28일 까지, 및 8월 18일 부터 29일 까지 Kingston, Jamaica에서 열릴 예정이다.

총회 제2차 회기 모임에서는 기구 理事會(Council)의 구성을 마쳤는 바, 이사국은 전부 36개국이며, 한반도 주변국의 이사국 선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 가	Group	임기
한 국	E	2년
일 본	A	4년
중 국	B	4년
미 국	A	2년

「海洋法協約」당사국 회의 제6차 모임이 1997년 3월 10일 부터 14일 까지에 걸쳐 New York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당사국 회의 의장을 선임하고 대륙붕경계심사위원회의 21명 위원을 선임토록 예정되어 있다. 또 여기서는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합의 초안을 공식 문서로 인준하는 절차를 갖게될 것이다. 제7차 모임은 1997년 6월 19일 부터 23일 까지에 걸쳐 New York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는 해양법 재판소 운영예산을 확정한다.

(3) 公海 漁業會議와 公海 생물자원 보존「履行協約」의 채택

200해리 排他的 經濟水域은 1982년「海洋法協約」이 새로이 규정한 중요한 해양 관할 제도로서 1970년대 이후 부터 해양 질서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한 획기적인 개념이다. 이 새로운 제도는 200해리의 광대한 관할수역 범위에 걸쳐 연안국에게 광범위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게 되므로서 인접국간의 해양 경계획정 문제를 둘러싼 해양관할권의 분쟁을 야기하였으며, 또 해양환경규제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한 점을 접어두고라도, 해양 자원의 개발 문제 특히 석유의 개발과 어류 등 생물자원의 개발은 이 제도로 인하여 더욱 촉진된 면도 있으나 반면에 과잉 개발을 촉발시켜 인류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서 해양 생물을 200해리 라고 하는 인위적인 경계로 통제하려는 법적인 착상은 특히 고도회유성 어족과 경계왕래어족 (highly migratory species and the straddling stocks) 들에 관해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물론 이 들에 관해 「海洋法協約」은 제63조에서 67조에 걸쳐 특수어종 관리라는 차원에서 따로 규정하고 또 公海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제116 이하 120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선언적 원칙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여 해양 생물 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원양 어업국과 연안국의 이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범적 기준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관련 이해관계국들 간에 일찍 부터 협의와 개선의 과제로 등장하였고 특히 1992년 5월 멕시코의 Cancun에서 열린 公海環境과 魚族資源 보존을 위한 국

제회의에서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새로운 행동규범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 선언의 정신은 1992년 6월 Rio De Janeiro에서 열린 유엔 국제환경개발회의(Rio Summi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다시 확인되고 그 Agenda 21 제17장 (C)절에서 公海漁業에 관한 국제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이 문제를 타결토록 촉구되었다. Rio Summit의 결의와 이에 부수된 유엔 총회의 결의들³⁰⁾에 근거하여 이른바 公海漁業 회의가 개최되었으며³¹⁾ 이 회의에서 「公海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履行協約」³²⁾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약의 골자는

- ① 공해 생물자원에 관해서도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MSY를 유지토록 보장한다는 것
- ② 해양환경과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예방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
- ③ 공해상과 EEZ안에서의 보존 조치를 일관성있게 유지한다는 것
- ④ 지속력 있는 국제적 협력의 수단으로 지역 협력기구를 마련한다는 것
- ⑤ 회원국의 위반어선을 이러한 보존 기구가 규제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비회원국도 이러한 보존 조치에 따른 의무에 면제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 「공해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履行協約」은 1995년 8월 4일자로 채택되었으며 30개국의 비준서 기탁으로 발효된다. 1996년 12월 13일 현재, 이 협약에 서명한 나라는 59개국이며 비준국은 미국 등 6개국이다. 한국, 일본, 중국, 및 미국의 서명현황은 다음과 같다.

30) UN GA Resolution 47/192.: 48/194 (21 December 1993)

UN GA Resolution 49/121 (19 December 1994)

31) 公海 漁業회의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제1회기 1993년 4월 19일 부터 23일

제2회기 1993년 7월 12일 부터 30일

제3회기 1994년 3월 14일 부터 31일

제4회기 1994년 8월 15일 부터 26일

제5회기 1995년 3월 27일 부터 4월 12일

제6회기 1995년 7월 24일 부터 8월 4일 까지

32) 이 이행협약의 정식 명칭은

“경제협력 어족 및 고도회유성 어종에 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 「海洋法協約」 관련 조항의 이행협약”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이다.

나라명	서 명	비 준
한 국	1996년 11월 26일	
일 본	1996년 11월 19일	
중 국	1996년 11월 6일	
미 국	1995년 12월 4일	1996년 8월 21일

Ⅲ. 韓國 주변국의 海洋 政勢

1. 미 국

심해저에 관한 履行協約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1994년 4월 26일 당시 미국무성 해양 담당 차관 David Colson 대사는 미국 상원 해양 어업위원회에서의 연설에서 履行協約의 내용이 미국의 국익에 “유익한 것(favorable)”으로 개정되었다고 단언하고 있으며³³⁾ 이 履行協約이 채택되자 미국 Clinton 행정부는 1994년 가을에 미 상원에 「海洋法協約」의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해양법에 관한 미국내의 유력한 견해들은, 「해양법 협약」은 향후 해양법 규범 발전의 기본적 틀로 기능한다고 보고, 항해, 해저광물의 개발, 어업 및 해양환경 문제 등에 있어서 미국이 IMO, FAO 및 UNEP 등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견지하고 ISBA의 이사회나 해양법재판소 및 대륙붕 경계심의위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견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海洋法協約」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호주, 독일, 회랍, 이태리 및 일본 등이 이미 이 「海洋法協約」에 비준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海洋法協約」의 체계 밖에 머물러 있는다면 향후 해양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종래와 같은 주도적 위치를 견지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³⁴⁾

미국은 현재 심해저 履行協約의 잠정적용국으로 1994년 7월 29일, 이 「履行協定」에 서명하였으며 1996년 7월 17일자에, 협약 비당사국으로서 잠정적 적용을 계속할 것임을 통고하였다.³⁵⁾ 그리고 1996년 8월 5일 부터 동 16일 사이에 Jamaica Kingston

33)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Oceanography House Merchant Marine and Fisheries Committee By Ambassador David A. Colson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Ocean (26 April, 1994)

<http://www.clark.net/pub/diplonet/colson.html>

34) Ann L. Hollick, "Ocean Law: Senate Approval of the UN Convention", *Strategic Forum* 41, (Aug. 1995).

에서 개최된 국제심해저 기구 총회 제2회기 속개회의에서 동 機構의 이사회는 미국의 「履行協定」 잠정적용과 그 잠정적 당사국 지위를 1998년 11월 16일 까지 연장할 것을 승인하였다. 앞서 지적한 대로 미국은 ISBA 이사회에서 Group-A의 2년 임기 이사국으로 선임되어 있으며 공해어업에 관한 履行協約에는 1996년 8월 21일자로 비준하고 있다.

2. 일본

「海洋法協約」 체계의 본격적인稼動은 韓國을 비롯한 동아시아 중요 국가들로 하여금 이 협약에 서둘러 비준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³⁶⁾ 특히 이 東아시아에서는 그 동안 잠재되어 왔던 해양 관할권 분쟁을 표면화시키고 있다. 해양법협약의 규범 체계가 본격적으로 발효하여 여러 나라가 이 협약에 비준하게 될 때, 특히 韓國을 비롯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韓-中-日 3개국간에는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海洋 管轄 분쟁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리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예상되어 오고 있었다.³⁷⁾

그러나 이 예상은 불운하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수년 동안 중국과 釣魚島(다오위다오; 중국 명칭) 또는 尖閣列島(일본명)에 대한 영유권을 두고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1996년에는 양국간의 국민적 감정의 충돌 현상 까지 빚어내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獨島의 영유권을 두고 오래전 부터 잠재적인 대립관계에 있어왔다. 특히 지난 1996년에는, 한국과 일본은 해양법협약의 비준을 계기로 그 동안 유예해 놓았던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문제를 실행해야 하는 때를 맞게 되었는데, 특히 일본은 한국과의 중첩된 경제수역의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獨島(일본식으로는 竹島)가 자국의 영토라고 하는 전제하에 기선을 획선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온 것이다. 즉 일본은 지난(1996년) 봄에, 200해리 경제수역 범위의 획정에 獨島를 起點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獨島 영유권 문제를 韓日 간에 다시 제기하였다.³⁸⁾

2차대전의 침략적인 蠻行을 한번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한 적이 없는 일본은 성숙되

35) United State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Memorandum (August 11, 1994.)

36) 이들 관련 국가들의 「海洋法協約」에의 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China	7	June	1996.
Japan	20	June	1996.
Republic of Korea	29	January	1996.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updated and reviewed on 1 November 1996.

37)拙著, 「現代海洋法論」, (서울: 아세아 社, 1988), p.25.; pp.316-37.; p.443.

38) 「조선일보」 1996년 1월 5일자, 「중앙일보」 1996년 1월 7일자, 「한겨레신문」 1996년 1월 31일자.

지 않은 정치적인 자세로 특히 해양문제에 관련해서 한국과의 대결적 국면을 심화시키고 있다. 주목되는 바는 하시모도(橋本龍太郎) 일본 총리와 이케다(池田行彦) 외무장관 등이 전에 없이 1996년 벽두부터 원색적인 발언으로 獨島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 하시모도 정권은 지금까지 있어 온 일본 내각 중에 가장 보수우익의 성향이 강한 정권이며 지난 1996년 가을 선거에서 재집권함으로써³⁹⁾ 그들의 특유한 국내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 그 보수우익의 성향을 더욱 강하게 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

물론 獨島영유권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영토 분쟁과는 달리 법적으로 韓國 측의 영토적 권원이 始原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잘 확정되어 있는 것이지만⁴⁰⁾, 그래도 일본이 이 문제에 정치적, 국민 정서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영유권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虛構性과 不法性을 지적하고 다시는 韓日간에 이러한 근거 없는 난제가 양국의 善隣友好 관계를 저해시키고, 합리적인 협조 체제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결연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바야흐로 선포, 시행되어야 하는 200해리 관할수역의 韓日 간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단호하고 명확한 한국 측의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海洋法協約」은 일본에 대하여 1996년 7월 20일자로 발효되었다. 일본은 「海洋法協約」에의 비준을 기하여, 그 해양 관련 법령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⁴¹⁾

특히 일본은 1996년 6월 14일 종래의 영해법을 개정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일본의 영해법은 1977년 제정되어 12해리 영해제도를 도입한바가 있다. 이 법은 본문이 2개 조문으로 구성된 간결한 입법이지만 3해리 제도를 고수하던 일본이 12해리 영해 범위를 받아드리고, 특히 세도나이카이(瀬戸内海)의 수역을 내수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였다.

39) 「중앙일보」, 1996년 11월 8일자.

40) 拙稿, “울릉도와 독도 탐방기,” 「해양한국」, 1991년 6월호, pp.96-100.

柳炳華, “독도의 국제법적 문제,” 국제법학회 논총, 제 41권 제 1호 (1996년 6월), pp.177-184.

41) 일본의 해양관련 법령 정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②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③ 排他的 經濟水域 및 大陸棚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
- ④ 排他的 經濟水域 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
- ⑤ 排他的 經濟水域 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규 제정)
- ⑥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
- ⑦ 수자원 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부 개정)
- ⑧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⑨ 원자로 등 규제법 및 방사선 장애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부 개정)
- ⑩ 해안보안청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부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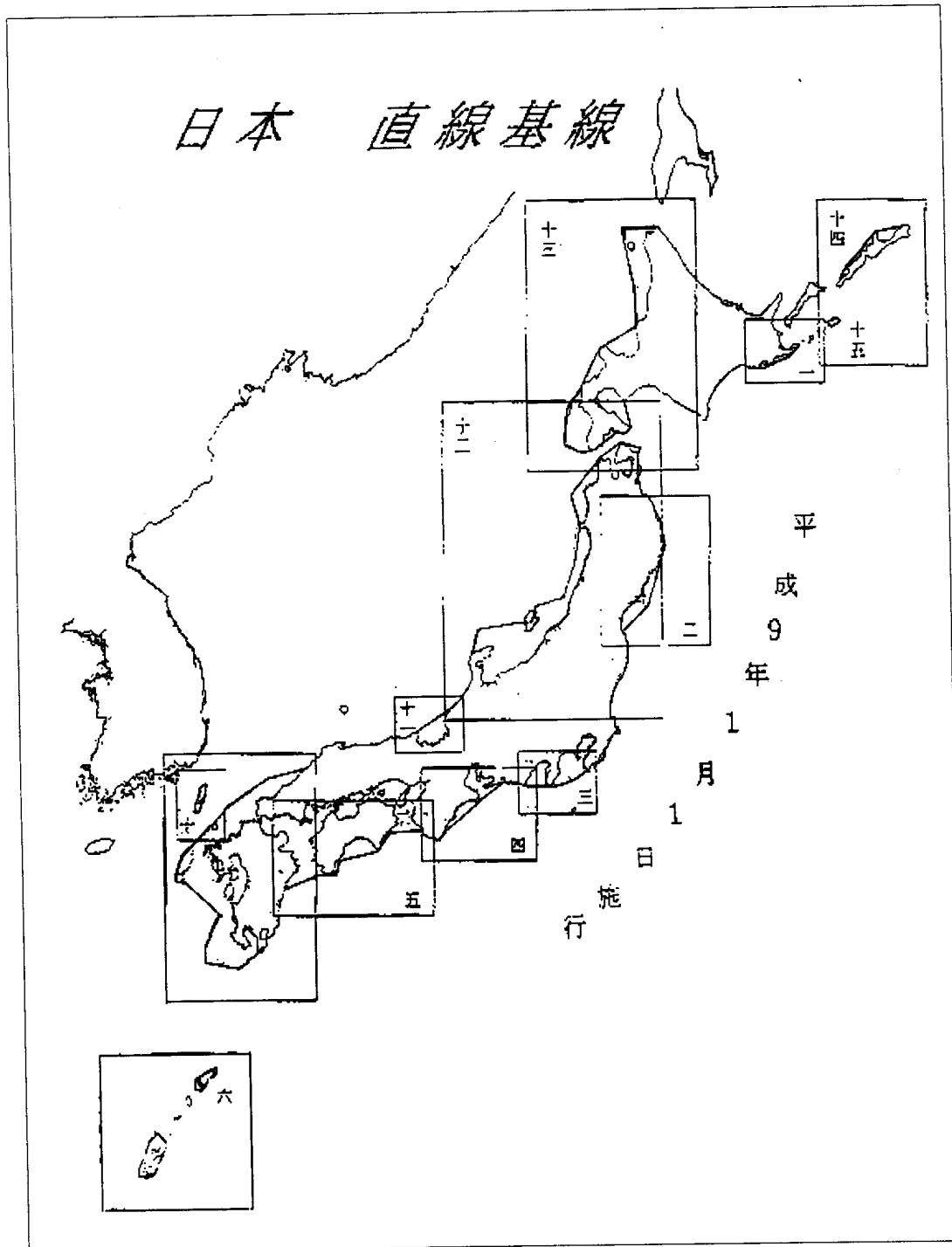
개정된 법에서 일본은 24해리의 접속수역을 설정 공포하였으며, 특히 영해 基線에 관한 조항(제2조)에 직선기선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제1항 및 2항의 수정) 즉 일본은 1977년 이래 영해의 기선으로는 해안의 평균저조선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기선을 사용해 왔던 것이나 이 개정 영해법을 계기로 직선기선을 같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6년 7월 5일 공포된 일본의 영해법 시행령에 의하면(동 제2조 별표 1) 일본의 직선기선은 일본의 북해도, 본주, 및 규수의 전 해안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海洋法協約」제7조나 10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해양법상의 직선기선의 기준을 거의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채택되어 있다. 이 과감한 직선기선들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적용 시행된다. (지도-1 참조)

이러한 직선기선들은 한국과 일본간에 앞으로 타결되어야하는 排他的 經濟水域의 경계획정이나 양국간의 어업수역 범위의 타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해양법상의 기준에 의거해서 볼 때 일본의 직선기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 ① 灣口를 잇는 직선기선에 관하여 일본 영해법은 그 제2조 1항 및 2항 그리고 시행령 2조 2항 1호 및 2호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海洋法協約」제7조에 부합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본 본주 남동부와 Sikoku동부 지역 연안에서 설정된 직선기선은 灣口의 길이는 24해리 미만이지만 굴입의 정도가 미약하여 灣口 閉鎖線을 직경으로한 반원의 면적 보다 굴입의 면적이 적어 「海洋法協約」제10조의 요건에 위반되고 있다.
- ② 일본의 기타 직선 기선들은 해안으로 부터 상당히 (최대 60해리 까지) 떨어져 있는 섬들을 연결하고 있고 이 섬들은 해안을 따라서 (along the coast)위치해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일본의 직선기선의 설정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잘려들여간 지형이나(deeply indented and cut into coast line),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a fringe of islands along the coast in its immediate vicinity)” 에서만 직선기선을 적용토록한 「海洋法協約」 제7조에 위반된다.
- ③ 따라서 이들 직선기선이 새롭게 형성한 일본의 내수는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만큼 육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

(지도-1: 일본의 직선기선)



3. 중 국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의 가동으로 불이 붙은 해양 이용의 경쟁은 그 동안 잠재해 있던 해양 관할 분쟁을 표면화하게 하였다. 특히 광물 자원(석유 및 천연 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뒤늦게 확인된 일부 먼 바다 지역의 불모(不毛)의 섬들(Paracel 群島, Spratly 群島)에 관한 영유권 분쟁이 서서히 표면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95년 2월 중국은 공공연히 군사력을 사용하여 Spratly 群島의 일부인 암도(岩島)(Mischief Reef)를 점거하였다. 대륙붕 개발과 해양관할 경계문제 등으로 중국과 잠재적 분쟁 요인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최근 동태를 주시해야만 할 것이다.

중국은 1995년 봄 武力에 의한 岩島의 점거 이전에도 그들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前歴을 갖고 있다. 즉 지난 1974년 월남으로부터 Paracel 群島를 탈취하였으며 1988년에는 공산 월맹으로부터 Spratly 群島의 일부를 점거할 때는 월맹군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중국은 “타국의 영역”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점거된 중국의 영역을 회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언제나 해양 자원의 공동개발을 주장하므로써 결코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자세를 취하지도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의 시각에서는 아직 중국의 해군력은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현재에도 중국의 군사력은 월남이나 필리핀보다는 월등하게 우세하다. 이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개적인 군사 행동이 아세안(ASEAN)을 결속시켜 중국에 공동적으로 대항하는 사태로 진전됨을 회피하기 위해 극히 조심스러운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미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군림하는데 있어 이 우세한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은 드러내 놓고 군사적 우세를 과시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군사적 행동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압력을 강화시키고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협력을 박탈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문제된 Paracel과 Spratly 群島에 관한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도 중국은 그 동안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관련국들 간의 협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을 정도로 신중하고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의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른 바 “도나츠 방식”(The Doughnut Formula)이라는 중재안(仲裁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에 의하면 이 지역의 연안국인 필리핀, 월남, 말레이시아 및 부루나이 등이 그 연안 200해리의 경제수역을 관할하고 그 한 가운데 남아 있는 Paracel과 Spratly 群島 및 그 인접 해역은 공동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인도네시아 안(案)을 무시하고 Paracel과 Spratly 群島는 물론이고 이를 둘러싼 南中國海의 거의 전 영역을 중국의 역사적 영역권으로 주장하였

다. 최근에는 중국이 주장하는 이 “역사적 영역”에는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천연 가스 유정(油井)인 Natuna Gas Field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금 까지 인도네시아는 南中國海의 직접적인 연안국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중재자(仲裁者)로 자처하고 “도나츠 방식”과 같은 중재안을 내놓는 등 중립적 입장을 취해 왔던 것이지만 이제 더 이상 중립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Natuna유정은 매장량 45조(兆) 입방 피트(ft³)인 세계 최대의 천연 가스 유정이며 인도네시아의 석유회사(Pertamina)와 미국의 엑슨회사(Exxon) 사이에 350억 불의 개발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 일본, 대만 등 천연 가스 수요국들과 공급계약이 추진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 유정은 인도네시아의 영토인 Natuna 섬(島)으로 부터 200해리 안쪽 즉 경제수역 범위내에 위치 하고 있다. 유명한 해양법 학자이며 외교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의 Hashim Djalal 大使는 이 문제로 여러 번 북경을 방문하여 해양법상의 원칙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은 법적인 논쟁을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법적인 논쟁을 회피하는 중국의 이 “의도된 모호성”(intended ambiguity)은 무력적 우세를 부각시키려는 중국의 유명한 전략으로 관련 국가들을 이미 괴롭히고 있다. 중국은 또 南中國海 영유권 문제에 관한 한 다자간 협상(多者間 協商)을 회피하고 반드시 양자(兩者) 협상을 고집함으로써 아세안(ASEAN) 국가들의 공동 대처를 막으려고 한다. 중국은 공동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양자협상 형태로 분쟁에 관련된 연안국들을 개별 접촉함으로써 중국의 영유권을 기정 사실화 하고, 아울러 그 군사적 우위가 가장 효과적으로 협상 대상국에게 심리적 압박을 작용하도록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일관된 “계산된 모호성”(計算된 模糊性;calculated ambiguity)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분쟁과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일급 군사강대국(一級 軍事 強大國)으로서의 영향력을 보유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구태여 감추려 하지 않는다. 1994년 10월에 황해에서 발생한 미국 항모 Kitty Hawk와 중국 핵 잠수함의 조우 사건은 이 지역에서 이미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에 까지 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소위 건설적 접촉(建設的 接觸; constructive engagement)을 긴밀히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소련과 맺었던 것과 같은 「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협약」(Incident at Sea Agreement:IASA)을 체결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200해리 관할수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던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나 이제 「海洋法協約」 체계가 본격적으로 稼動함과 더불어 경제수역제도를 채택,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즉 한국과 중국과의 경계문제는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와 못지 않게 경계확정의 기준과 그 적용 원칙 등에 관해서 심각한 異見 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해양관할 범위의 확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⁴²⁾ 그리고 중국은 종래와 같은 태도로 이 새로운 領海法에서 그 영

해를 “직선기선 방식”으로 확정함을 규정해 놓았으나⁴³⁾ 최근까지도 그 직선기선을 公示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

한국과 중국이 對向하고 있는 黃海와 東中國海는 하나의 통일된 해면으로서 그 면적은 각기 40만 및 75만 2천 평방km 인 좁은 바다이고, 對向한 沿岸의 어디에서도 상호의 거리가 400해리에 이르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는 특히 200해리 경제수역의 범위 확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한국과 중국간에는 경계획정의 합의가 요구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는 한국과 중국간의 관할수역 범위를 起算할 기준이 될 領海기선의 문제가 중요시 되게 된 이유이다.

특히 중국은 1958년 영해를 선포할 당초부터 領海 범위를 直線基線 방식으로 확정할 것임을 강조해 놓고 있으면서도⁴⁴⁾ 지난 1996년 5월 15일 이전까지는 그 구체적인 直線基線을 公示한 바가 없었으므로 양자강 입구의 섬들, 특히 그 河口에서 69해리나 돌출해 있는 童島에서 중국의 관할 범위를 起算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韓中 간의 경계획정에 있어 중요한 잠재적 논점이 되어 왔다.⁴⁵⁾

지난 1996년 5월 15일 중국의 제8기 전국 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유엔 해양법협약」의 비준에 관한 중국 전국 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결정문을 아래 와 같이 발표하였다. 즉,

1. 「해양법 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주권과 관할권을 향유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항국 또는 인접국과 협상을 통하여 국제법의 기초위에서 공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자의 해양관할권 경계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3. 중화인민공화국은 1992년 2월 25일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와 접속수역법」 제 2조에서 열거한 각 군도와 도서의 주권을 다시 한번 밝힌다.
4.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양법 협약」의 영해 내의 무해통항과 관련된 규정 즉 연안국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외국 군함이 영해를 통과할 때에는 반듯이 사전에 해당국의 허가를 얻거나 해당국에 통지해야 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⁴⁶⁾

42) 1992년 중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2조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aw on Territorial Waters

Approved at the 24th plenary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7th National People's Congress. Promulgated by the Chairma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55.

43) 1992년 중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3조.

44) 중공의 「中國 領海에 관한 宣言」(1958년 9월 4일)

Peking Review Vol.I, No.28, September 9, 1958., p.21.

45) 拙稿, 「한국 領海法 개정 試案의 연구」외무부 연구 용역 (1993년 12월 1일), pp.53-56.

Jeanette Greenfield,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Oxford: Clarendon Press, 1992).

이로서 中國은 200 해리 排他的 經濟水域을 선포 시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즉 앞으로 중국은 국내법 형식으로 排他的 經濟水域 制度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⁴⁷⁾ 특히 韓國과의 관계에서 黃海와 東中國海의 어족자원 개발과 관리에 명확한 관할 범위를 확정시키는 것을 회피해온 중국으로서는 200 해리 排他的 經濟水域을 선포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므로 중국이 200해리 排他的 經濟水域을 선포하는 것은 韓國으로서는 일단 환영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중국은 그 경계의 획정에 있어서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관련국가와 협의로서 정하겠다고 한 것은 앞서 분석한 대로, 中間線 原則의 우선적 지위를否認해온 경계문제에 관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中國 정부는 이날(5월 15일자) 또 하나의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中國 大陸沿岸과 群島 주변의 領海 基線을 선포한 것이다. 원래 1992년 중국의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법」 제3조에서는 중국의 영해 기선은 “직선기선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정하고 그 제15조에서 “중국의 領海 基線은 중국 정부가 公表한다”고 정했던 것이므로 중국의 영해 기선의 공표는 실로 4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특히 이번 중국 정부의 영해 기선 발표는 곧 이어 對向國인 韓國 및 日本과 벌어질 排他的 經濟水域의 경계획정 협의에서 관할권 범위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관련국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날 중국이 그 직선기선을 공시함에 있어 종래 우려해 오던 문제의 암초들을 모두 그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공표하였기 때문에⁴⁸⁾ 이제 한국과 중국은 그 경계획정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심각한 異見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도-2 참조)

해양법상의 기준에 의거해서 볼 때 중국의 직선기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 ① 중국의 전 해안의 기선을 직선기선으로 획정한 것은 “각 해안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그 각 특성에 적합하도록 각 조에 규정된 방식을 교대로 적용하여” 기선을 결정토록한 「海洋法協約」제14조에 위반 된다.
- ② 산둥반도 以南 양자강 입구까지의 해안은 비교적 단조로운 지형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직선기선을 획정한 것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잘려들어간 지형이나(deeply indented and cut into coast line),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a fringe of islands along the coast in its

46) 1996년 5월 15일 新華社 通信.

47) 중국은 지난 1996년 12월 24일 제8기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제23차 회의에 「전속 경제구와 대륙붕법(안)」을 상정하였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중국이 공포한 직선기선으로 부터 200해리 排他的 經濟水域을 설정하고 大陸棚의 범위도 200해리 까지 적용 시행함을 그 내용의 골자로 한 것이다.

1996년 12월 26일자: 홍콩 「明報」, 1996년 12월 25일자.

48)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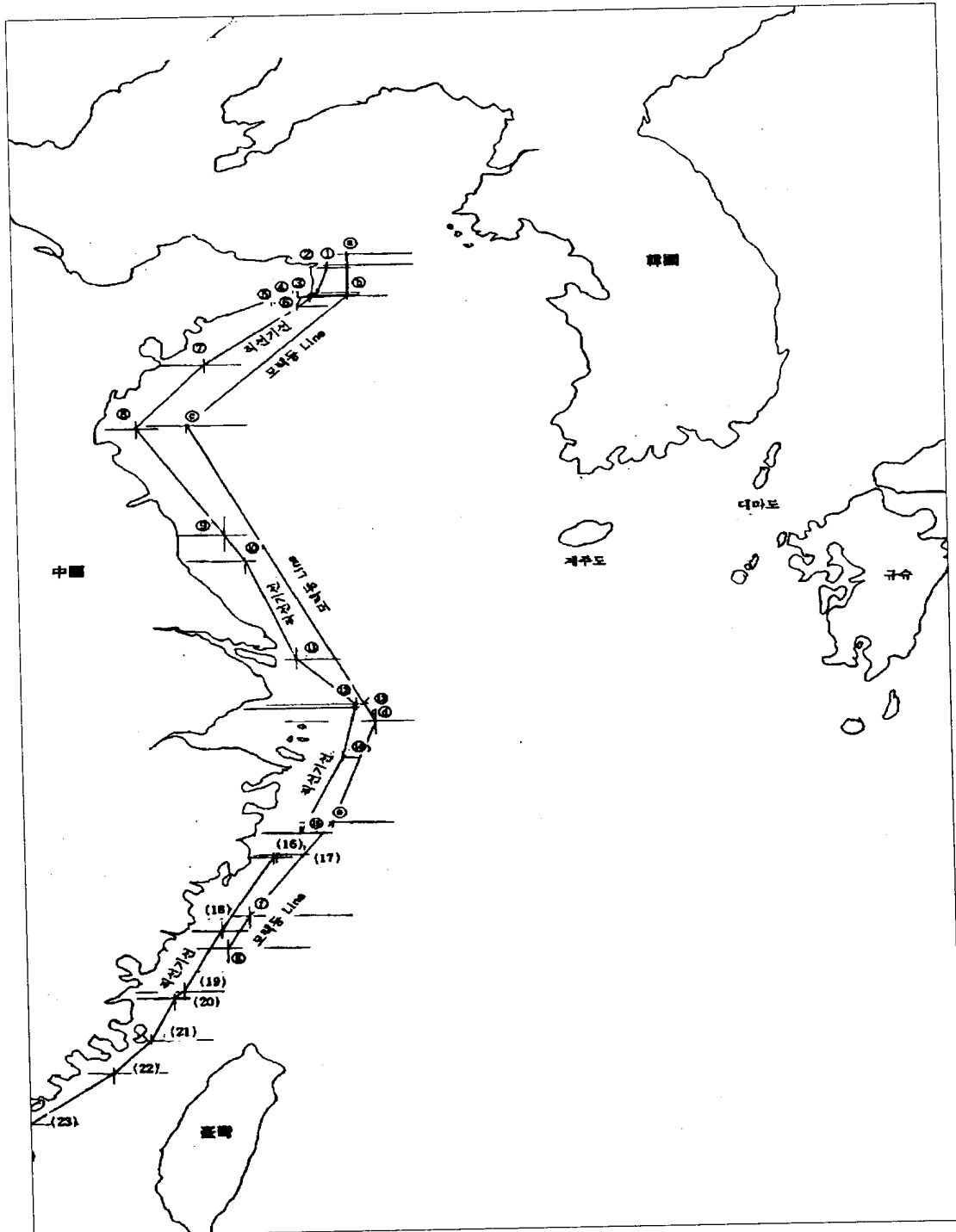
On the Baseline of the Territorial Se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5 May 1996)

Limits in the Seas No.117. Straight Baseline Claim: China, Annex I

immediate vicinity)”에서만 직선기선을 적용토록한 「海洋法協約」 제7조에 위반된다.

- ③ 많은 직선기선 기준점들이 淺海의 砂洲나 干出地 위에 설정되어,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는 적절한 지점은 육지 연안 또는 외곽도서의 평균 저조선 위에 지정되어야 한다.”는 「海洋法協約」 제7조 1항 및 2항에 위반된다.
- ④ 특히 양자강 입구의 섬들에 관련해서, 琦嶇群島 및 馬鞍 列島 등 해안에 수직 방향으로 징검다리식 위치에 있는 섬들을 직선기선의 기준점으로 채택한 것은 “해안을 따라서 (along the coast)” 위치한 섬들만을 기선으로 설정토록 한 「海洋法協約」 제7조 1항에 위반된다.

(지도-2: 중국 동해안 직선기선과 모택동 Line)



參 考 文 獻

- 1) 拙著, 「現代海洋法論」, (서울: 아세아社, 1988)
- 2) 拙著, 「남북한 해상 경계선 설정 방안」, 국방부 정책연구보고(1993년 11월)
- 3) 朴椿浩, 柳炳華, 「海洋法」(서울:민음사, 1986)
- 4) 柳炳華, 「東北亞地域과 海洋法」(서울:진성사, 1991)
- 5) 大韓民國 水路局, 「中國 沿岸 水路誌」, 書誌 제201호 (1989. 12월)
- 6) 拙稿, “울릉도와 독도 탐방기,” 「해양한국」, 1991년 6월호
- 7) 拙稿, 「한국 領海法 개정 試案의 연구」외무부 연구 용역 (1993년 12월 1일)
- 8) 拙稿, “현대 관습국제법 형성을 위한 慣行과 法的確信에 관한 小考,” 「국제법 학회 논총」, 제38권, 2호 (1993년 12월)
- 9) 拙稿, “다자협약이 갖는 현대 관습국제법 형성에 있어서 선언적 실증적 기능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창간호, (1994년)
- 10) 拙稿, 「심해저 개발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한양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柳炳華, “독도의 국제법적 문제,” 국제법학회 논총, 제 41권 제 1호 (1996년 6월)
- 12) 朴椿浩, “한반도 주변 대륙붕 경계문제 현황: 유엔 「海洋法協約」 발효에 즈음하여,” 해양정책연구 제9권 2호 (1994년 겨울)
- 13) 高田捻久, “일본의 유엔 海洋法條約 비준과 국내법 整備”, 九州國際法學會Seminar, 九州大學, 福岡, 日本國 (1996년 11월 6일)
- 14) D. P. O'Connell, *International Law*, Vol 1, 2nd ed. (London : Stevens and Sons, 1970)
- 15) D. P.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xford: Clarendon Press, 1984)
- 16) D. P.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I (Oxford: Clarendon Press, 1982)
- 17) Jonathan Charney,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London : Martinus Nijoff Publishers, 1994)
- 18) Jonathan Charney, Lewis Alexander, ed.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 (Martinus Nijoff Publishers, 1993)
- 19) Jeanette Greenfield,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20) Prosper Weil,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Reflections* (Cambridge: Grotius Publications, 1989)

- 21) E.D.Brown, *The Area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London: Graham & Trotman, 1984)
- 22) *Black's Law Dictionary*, 6th edition, (St. Paul: West Publishing Co., 1990)
- 23) Hazel Fox ed.,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Vol. II., Research Report on A Model Agreement for Joint Development*, (London: British Ins.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990)
- 24) Satya Nandan, *The Law of the Sea: Baselines, An Examin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ew York, 1989)
- 25) Satya Nandan, Shabati Rosenne, *A Commentary: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Volume II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 26) Gary Knight, and Hungdah Chiu,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ases, Documents and Readings*, (New York: Elsevier Science Publisher, 1991)
- 27)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5, vol. II
- 28) Victor Prescott, *The Maritime Political Boundaries of the World*, 1985
- 29) Peter Beazley, *Maritime Limits and Baselines: A Guide to their Delineation*, The Hydrographic Society Publication No.2 (2nd ed. revised August 1978)
- 30) U. S. Dept. of State, *Limits in the Seas*, No.117, Straight Baselines Claims: China, (July 9, 1996)
- 31)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79)
- 32) M.Sinclai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73)
- 33) Churchill and Lowe, *The Law of the Sea* (2nd ed. 1988)
- 34) D. J. Attar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International Law* (1987)
- 35) Robert D.Hodgson, *Islands: Normal and Special Circumstances* U. S. Dept. of State Research Study RGE-3, 1973
- 36) D. W. Bowett, *The Legal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1979).
- 37) B.Gidel, *Le Droit international public de la mer* (1934) vol.3.

- 38) C.R.Symmons, *The Maritime Zones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Hague, 1979)
- 39) R. R. Churchill and A. V. Lowe,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 Press, 1983)
- 40) D.R.Allen and P.H.Michell, 51 *Oregon Law Review*(1972)
- 41) J.Charney and L.Alexander ed.,*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 42) Peter Beazley, *Maritime Limits and Baselines: A Guide to their Delineation*, The Hydrographic Society Publication No.2 (2nd ed. revised August 1978)
- 43) David D. Colson, "Comments." *Consensus and Confrontation:U.S. and the LOS Convention LSI Workshop Proceedings* ed. by J. M. Van Dyke (Honolulu: LSI, 1985)
- 44) David D. Colson, "The Maritime Boundaries of the United States: Where Are We Now ? 20 Law of the Sea Institute Proceedings
- 45) David D. Colson, "The United Kingdom-France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72 *AJIL*(1978)
- 46) Jonathan Charney, "Progress in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Law," 88 *AJIL*(1994)
- 47) Tullio Treves,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The Book Review." 88 *AJIL* (1994)
- 48) Ted L. McDorman, "Problem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Southeast Asia," *New Directions in Ocean Law Policy and Management* (Halifax: Dalhousie Univ., 1986).
- 49) Keit Hight "International Decisions: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Areas Between Canada and France (St. Pierre and Miquelon)," 87 *AJIL* (1993)
- 50) R. D. Lumb,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in the Timor sea," *Austral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7 (1981).
- 51) L. F. E. Goldi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ILA Seoul Conference (1986) *Report of the Committee*. International Committee on EEZ
- 52) Paul C.Yuan, "The New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J.M.Van Dyke ed., *Consensus &*

- Confrontation: The US & the LOS Convention* (Honolulu: LSI, 1984)
- 53) Zhiguo Gao, "China and the LOS Convention", *Marine Policy*, Vol.15.(1991)
- 54) U.S. Dept. of State, "Developing standard guidelines for evaluating straight baselines", *Limits in the Seas*, No. 106.
- 55) Ashley Roach and Robert Smith, *United States Responses to Excessive Maritime Claims*, 2nd ed.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6)
- 56) U.N. Office of the Law of the Sea, *The Law of the Sea: Baselines*, (1989)
- 57) U.S. Dept. of State Dispatch Supplement, "Law of the Sea Convention, Letters of Transmittal and Submittal and Commentary," Vol.6. (February 1995)
- 58) C. H. Park,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14, No.2 (1973)
- 59) Jon M. Van Dyke, "The Role of Islands in Delimiting Maritime Zones: The Case of The Aegean Sea," *Ocean Yearbook*, Vol.8, 1989
- 60) J. M. van Dyke and R.A. Brooks, "Uninhabited Islands: Their Impact on the Ownership of the Ocean's Resources", 12 ODIL
- 61) A. A. Archer and P.B. Beazley, "The Geographical Implications of the Law
- 62) Ying-jeou Ma, *Legal Problems of Seabed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Occasional Papers Reprint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No.3, School of Law, Univ. of Maryland, 1984.
- 63) Rudolf Bernhardt, "Interpretation in International Law,"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7.(1984)
- 64) B. Buzan, "Negotiating by Consensus: Developments in Technique at the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1981) 75 AJIL
- 65) R. Dupuy, "The Negotiating Process", (1981) 5 *Marine Policy*
- 66) R. D. Hodgson and Robert Smith, "The 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Committee II): A Geographical Perspective", 3 ODIL(1976)
- 67) E. D. Brown, "Rockall a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Kingdom: Part 1", 2 *Marine Policy* (1978)

- 68) Walter van Overbeek, "Article 121 (3) LOSC in Mexican State Practice in the Pacific," *International Journal of Estuarine and Coastal Law*, Vol.4, No.4.(1989)
- 69) K. G. Kweihed, "EZ(uneasy) Delimitation in the Semi-enclosed Caribbean Sea:Recent Agreements Between Venezuela and Her Neighbours," *Th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8(1980).
- 70) Mark B.Feldman and David Colson, "The Maritime Boundaries of the United States." 75 AJIL(1981)
- 71) Gideon Rottem, "International decisions: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87 AJIL (1993)
- 72) Zhiguo Gao, "China and the LOS Convention", *Marine Policy*, Vol.15.(1991)
- 73) Robert D. Hodgson and Lewis Alexander, "Towards an Objective Analysis of Special Circumstances: Bays, Rivers, Coastal and Oceanic Archipelagoes and Atolls," Law of the Sea Institute Occasional Paper No.13, (1971)
- 74) 아세아, 『長崎에서 廈門』 대한민국 수로국 지도-850, (1978년 12월 발행), 1995년 개보 고시 제33호
- 75) 아세아, 『上海港 附近』 대한민국 수로국 지도-811, (1990년 12월 발행), 1996년 개보 고시 제1호.
- 76) 『China-Yellow Sea: Qingdao to Chengshanjiao』 U.K. Hydrographic Office, (25th June 1982) small correction 1994-3956, 1996-2854.
- 77) 『China-East Coast: Ningbo Gang to ChangJiang Kou』, U.K. Hydrographic Office, (16th November 1984) small corrections 1996-1214, 3010.
- 78) 『China-Huang Hai: Sheyanghe Kou to Qingdao Gang』, U.K. Hydrographic Office, (30th July 1982) small corrections 1996-273, 1526.

